

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(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(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, 인증 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)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- 라. 다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.
- 마.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·사용정지, 인증품의 판매금지·판매정지, 회수·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은 다음 1) 및 2)의 인증품을 처분대상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인증품에 다른 인증품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.
 - 1)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
 - 2)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과 생산자, 품목,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(위반사항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취급한 자 또는 취급시기가 동일한 인증품을 말한다)
- 바.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사용정지와 인증품의 판매정지 처분은 해당 인증품의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사.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가. 인증사업자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
<p>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격리하지 않거나 무항생제인증 가축으로 판매한 경우</p>		
<p>(7) 별표 6 제2호바목5)를 위반하여 치료목적 외에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</p>	인증취소	
<p>(8) 별표 6 제2호바목6)을 위반하여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,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</p>	인증취소	
<p>(9) 별표 6 제2호바목7)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</p>	인증취소	
<p>(10)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</p>	시정조치 명령	인증취소
<p>(11)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</p>	인증취소	
<p>(12) 무항생제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</p>	인증취소	
<p>다) 취급자 (1) 별표 6 제3호라목1)을 위반하여 소</p>	인증취소	

<p>분·저장·포장·운송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</p> <p>(2)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</p> <p>(3) 별표 6 제3호마목1)·2)를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, 합성농약 성분이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</p> <p>(가)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</p> <p>(나)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</p>		<p>인증취소</p>	
<p>3) 인증사업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</p>	<p>법 제42조의7 제1항제2호, 법 제42조의10 제8항</p>	<p>시정조치 명령</p>	<p>인증취소</p>
<p>4)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42조의7 제1항제3호</p>	<p>인증취소</p>	
<p>5) 전업,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</p>	<p>법 제42조의7 제1항제4호</p>	<p>인증취소</p>	
<p>6) 인증사업자가 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</p>	<p>법 제42조의10 제8항</p>	<p>시정조치 명령</p>	

나. 인증품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
1) 인증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등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	법 제42조의10 제8항	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·사용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·판매정지
2) 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	법 제42조의10 제8항	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
3)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	법 제42조의10 제8항	해당 인증품의 판매금지·판매정지·회수·폐기
4)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	법 제42조의10 제8항	해당 제품의 인증표시의 제거·사용정지

3. 행정처분 절차

가. 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를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.

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.

다. 제2호나목3)에 따라 해당 인증품의 회수·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·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, 그 계획에 따라 회수·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이 경우 회수·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.

라. 다목에 따른 회수·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